

2016년 여성단체 지방보조사업 공모 공고

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의 능력개발·복지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여성단체와 함께 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방보조사업을 공모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비영리 민간 여성단체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16년 2월 일

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
1.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및 규모

단체 제안사업

지원사업 분야	지원사업 공모 대상	보조사업자 선정
여성의 사회적 참여 분야	◦ 여성역량강화 및 건전가정 지원 사업	사업별 ○개 단체 선정
	◦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	
	◦ 양성평등 참여 및 문화 확대 사업	

2. 신청 자격 :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아래요건을 갖춘 단체

- 주된 사무소가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고, 회원이 성북구민으로 50인 이상인 단체
- 구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으로 해당단체의 핵심추진사업 위주의 사업
- 단체운영과 사업추진경비는 일부를 자체충당(30%이상)할 수 있는 단체
-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
-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
- 법인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비영리 공익사업추진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 단체

3. 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

① 지원대상

가. 단체운영비(지원근거 법령 조항 필히 기재)

- 대 상 :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운영비 일부 지원

- **자부담 30% 원칙**이며, 시설비, 자산취득비, 수선비,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 지원제외

나. 사 업 비

- 대상단체 : 성북구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기본적인 운영요건(회원, 회칙, 자체결산서류)을 갖춘 단체
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**자부담 30% 이상 원칙**
-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
-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
- 구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상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

② 지원제외대상

- 학술·연구단체,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와 관련된 단체
-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사업 및 단순캠페인
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
- 개인 및 기업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
- 2015년 공익사업 추진실적이 뚜렷하지 않은 단체
- 기타 타당성 검증이 어렵거나 보조사업으로 부적정한 사업

③ 지원범위 : 사업비 지원이 원칙

- 사업의 공익성, 파급의 효과, 경제성, 자부담율을 고려하여 타부분 예산으로 지원받지 않는 사업을 지원
- 단체 및 사업규모, 자부담액, 전년도 지원액, 지원사업의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지원
-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확산 등을 위해 총사업비의 70%이내 지원
 - 단,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, 구에서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보조금지원 심의 위원회가 지원결정 한 경우 등은 제외

4. 사업추진기간 : 2016. 3월 ~ 12월

- 회계연도 종료일(2016. 12. 31) 이후는 보조금 예산 집행 불가

5. 사업 신청기간 및 장소

○ 신청기간 : 2016. 2. 15(월) ~ 2016. 2. 17(수) (3일간)

-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(근무시간 내, 공휴일 제외, 2016. 2. 17일 소인분까지 유효)
 - 기존 지원단체 : 방문 또는 우편접수
 - 신규단체 : 방문접수

○ 신청장소

-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, (우)02848, 성북구청 7층 여성가족과

○ 제출서류

- 성북구 보조금 지원신청서----- (서식1)
- 2016년도 지원사업계획서----- (서식2)
- 단체소개서 및 회원명부(성북구민 50인 이상, 2016. 1. 1.일기준)----- (서식3, 3-1)
- 2015년도 사업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(2015년 보조사업자 작성)
- 단체정관 또는 규약
- 신청서 및 첨부서류 내용을 수록한 파일 (여성가족과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반드시 제출)
 - ※ 신청서식은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배부 및 성북구 인터넷 홈페이지(www.seongbuk.go.kr) 고시공고란에 게시

6. 심사 및 통보

- 성북구 지방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·선정(2016년 3월 중)
 - ※ 사업선정 후에 동일(또는 유사)사업이 다른 행정기관이 지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
- 심 사 : 구정발전기여도, 사업의타당성, 효과성, 2015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2016년도 추진계획 등
- 심사결과 : 단체별 개별통지

7. 보조금교부 및 정산

- 참여대상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약정 체결 후 지원
 - ※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 외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
- 사업 완료시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

8. 보조금 지급, 사업평가 및 정산

-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구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
- 사업비는 반기별 교부(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별로 교부)
-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 (필요시 현지조사 등)
-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

9. 기 타

-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접수 불가
-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조치
-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
- 지원결정된 단체는 지방보조금 집행 회계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(2016. 4월예정)
- 개별사업 완료 후 수혜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산서류에 첨부
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타문의 사항은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(☎2241-2573)로 문의 바랍니다.